
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18868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6. 5.

제안자 : 국토교통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건명	의안번호	발의자	회부일	회의정보	
				상정	소위심사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	2209351	권영진의원 등 10인	'25.3.27.	상정	제428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('25.8.21.)
				소위심사	제433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('26.3.30.)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	2212358	한준호의원 등 10인	'25.8.26.	상정	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('25.11.18.)
				소위심사	제433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('26.3.30.)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	2215879	복기왕의원 등 14인	'26.1.7.	소위심사	제433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('26.3.30.) ※ 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(2026.03.27.)

제434회 국회(임시회) 폐회중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(2026. 4. 30.)는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「국회법」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

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(이하 “그린리모델링”이라 함)에 대하여 보조금의

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그린리모델링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, 민간부문의 경우 이차지원사업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 및 민간 부분 모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공공부문의 에너지 다소비 노후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,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보조, 이차지원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의 근거를 구체화하여 그린리모델링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.

3. 대안의 주요내용

가. 그린리모델링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그린리모델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함(안 제2조제5호 신설).

나.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함(안 제13조의2 및 제35조).

다. 그린리모델링의 정의와 관련된 중복 표현을 삭제하고,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보조금, 자금의 용자 또는 이자의 감면,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의 근거규정을 마련함(안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신설).

라.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효율이 낮아 에너지 성능 및 효율

항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토
록 하고,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
자 함(안 제27조의2 신설).

마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
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확산, 홍보 사업 등을
추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7조의3 신설).
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“그린리모델링”이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단열, 창호, 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신설하여 에너지 성능향상 및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키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6조의2제1항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8. 제27조의2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관리·감독 제13조의2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”를 “제1항 및 제2항”으로, “표시방법 및 에너지 소비량의 적정성 검토 방법 등”을 “표시방법 등”으로 한다.

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전단 중 “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(이하 “그린리모델링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”을 “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보조금의 지급
2. 자금의 용자 또는 이자의 감면
3.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컨설팅 제공
4.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소유한 건축물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소유한 건축물
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건축물
4. 그 밖에 우선적으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한 건축물

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2(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,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이 「국방·군사시

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·군사시설에 속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,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추진과정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성능개선 효과 등을 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대상 공공건축물의 통보, 사업 추진계획의 수립·승인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27조의3(민간소유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촉진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그린리모델링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업
2. 그린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
3.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제29조제3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10호(중전의 제9호) 중 “제8호”를 “제9호”로 한다.

9.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안내 및 상담

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6조의2”를 “제6조의2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제29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 요구를 받은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이 법 시행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“그린리모델링”이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단열, 창호, 환기 등 에너지 관련 요소를 개량하거나 신설하여, 에너지 성능향상 및 에너지 효율을 개선시키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.</u></p>
<p>제6조의2(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) ①정부는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(計上)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17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6조의2(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7. (현행과 같음)</p> <p>18. <u>제27조의2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추진에 따른 관리·감독</u></p>
<p>18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19. (현행 제18호와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3조의2(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) ①·② (생략)</p>	<p>제13조의2(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

략)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에너지 소비량을 검토한 결과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하여야 하고,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보고, 공개, 표시 방법 및 에너지 소비량의 적정성 검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27조(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(이하 “그린리모델링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받을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·범위 및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같음)

<삭 제>

④ 제1항 및 제2항-----
----- 표시
방법 등 -----

-----.

제27조(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) ① ----- 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-----

-----. -----

-----.

1. 보조금의 지급

2. 자금의 용자 또는 이자의 감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면

3.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컨설팅

제공

4.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소유한 건축물
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 소유한 건축물

3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건축물

4. 그 밖에 우선적으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한 건축물

제27조의2(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

델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, 해당 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건축물이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방·군사시설에 속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,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추진과정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성능개선 효과 등을 관리·감독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

<신 설>

제29조(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
설립) ①·② (생략)
③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는 다
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~ 8. (생략)

<신 설>

9.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

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대상
공공건축물의 통보, 사업 추진
계획의 수립·승인 및 사후관리
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
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27조의3(민간소유 건축물의 그
린리모델링 촉진) 국가 및 지방
자치단체는 민간이 소유한 건
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을 촉
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
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그린리모델링 우수 사례의 발
굴 및 확산 사업
2. 그린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홍
보 사업
3. 그 밖에 그린리모델링의 촉진
에 필요한 사업 중 대통령령으
로 정하는 사업

제29조(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
설립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-----
-----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안내 및
상담
10. -----

<p>과 관련된 사업</p> <p>④ ~ ⑥ (생략)</p> <p>제35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국토교통부장관은 <u>제6조의2</u>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8. (생략)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- <u>제9호</u>---</p> <p>④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5조(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제6조의2제1항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제29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</u></p> <p>9. (현행 제8호와 같음)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